

의안번호	2211088
의 퇴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5.7.30.
추계번호	25D3442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어린이놀이기구를 모든 어린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0억 5,000만원, 2030년 45억 6,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16억 400만원(연평균 43억 2,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모든 어린이의 편리한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을 위한 개선 비용 지원 (안 제16조의2제2항)	4,050	4,138	4,381	4,472	4,563	21,604	4,321

주: 1. 모든 어린이의 편리한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을 위한 개선 비용 지원(안 제16조의2제2항)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함

2. 본 추계는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기구 중 1.2%를 모든 어린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인 무장애 통합놀이 시설로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민간인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등이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제2항 (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)	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기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6조의2제2항 (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지원)	특별자치시장 등은 모든 어린이의 편리한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1조제2항 (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)	-	· 미대상 행정안전부의 행정규칙인 「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」에 개정안에서 규정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며 기존 인력 등을 활용하여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
2	안 제16조의2제2항 (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모든 어린이에게 편리하도록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시설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개정안에서 규정한 모든 어린이에게 편리한 어린이놀이시설을 ‘무장애 통합놀이시설’로 가정
 - 본 추계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신규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시설에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 -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을 무장애 통합놀이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의 신규 설치 용역사업만 존재
- 본 추계는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1.2%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이고 이를 특별자치시장 등이 관리하는 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민간에는 설치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- 2023년 말 기준 영유아 포함 어린이(0~13세) 인구는 5,215,537명(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)이고 동일한 연령대의 장애인 수는 61,516명(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 자료)으로 장애어린이 비율은 1.2%
- 본 추계에서는 장애어린이 비율만큼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로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신규로 직접 설치하는 비용은 100% 부담하고 이외에 민간에서 설치하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은 그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
□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과 민간의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중 1.2%를 무장애 통합놀이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도별 설치수량에 연도별 1개소당 설치 비용을 곱하여 산출
 - (설치 수량) 2026년 18개소, 2030년 19개소로 추정
 -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, 2025년 현재 어린이놀이시설²⁾은 83,750개소이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최근 5년(2021~2025년) 연평균 증가율은 1.8%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1.9%	2.0%	2.0%	2.0%	2.0%

2) '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(<https://www.cpf.go.kr>)'에 따르면, 어린이 놀이시설 종류는 20종으로 분류: 목욕장업소, 도로휴게시설, 도시공원, 식품접객업소,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, 대규모 점포, 의료기관, 주택단지, 학교, 학원, 놀이제공 영업소, 주상복합, 박물관, 종교시설, 자연휴양림, 하천, 야영장, 공공도서관

- 추계기간 동안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전년대비 증가량이고 전제된 바와 같이 1.2%는 무장애 통합놀이기구를 설치하면, 2026년 18개소, 2030년 19개소로 추정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 놀이기구³⁾은 2024년 기준 36.6%⁴⁾이고 추계기간 동안 이를 적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설치하는 수량을 구분

[표 2] 무장애 통합놀이기구 설치 수량 추정: 2025~2030년

(단위: 개소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어린이놀이기구 수(a)	83,750	85,258	86,792	88,354	89,945	91,564
신규 설치 수량(b)	-	1,508	1,534	1,562	1,591	1,619
무장애 통합놀이기구 (d=c×36.6%)	-	7	7	7	7	7
설치 수량 (c=b×1.2%)	-	11	11	12	12	12
민간(=c-d)	-	11	11	12	12	12
합계	-	18	18	19	19	1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1개소당 설치 비용) 2026년 3억 2,400만원, 2030년 3억 5,100만원으로 추정
-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, 2024년 경기도 의정부시의 '무장애 통합놀이기구 조성사업(장미어린이공원)'의 관급자재 등을 포함한 공사금액은 3억 1,20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 적용

[표 3] 무장애 통합놀이기구 1개소당 설치 비용 추정: 2024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1개소당 설치 비용	312	318	324	331	337	344	35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어린이놀이기구를 모든 어린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0억 5,000만원, 2030년 45억 6,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16억 400만원으로 추계됨

3) 국가, 특별자치시 등 공공분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도시공원(12,135개소), 아동복지시설(409개소), 어린이집(6,521개소), 유치원(5,108개소), 박물관(93개소), 자연휴양림(135개소), 하천(81개소), 공공도서관(50개소), 학교(6,123개소)이며,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하여 추정

4) 2024년 기준 어린이놀이기구는 총 83,791개소로 추정되며, 이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30,655개소로 36.6%를 차지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개소, 백만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설치 수량	공공(a)	7	7	7	7	7	—
	민간(b)	11	11	12	12	13	—
	합계	18	18	19	19	19	—
1개소당 설치 비용(c)		324	331	337	344	351	—
추가재정소요 (=a×c+b×c×50%)		4,050	4,138	4,381	4,472	4,563	21,60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기구 중 1.2%를 모든 어린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인 무장애 통합놀이 시설로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민간인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등이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